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

2025년 10월 21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국 토 교 통 부 장 김 윤 덕

●대통령령 제35824호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2호 중 “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”를 “45시간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“제28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1의2.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: 2026년 1월 1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‘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’에서 ‘45시간’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